

교원 연구 보조비 지급 규정

제정 2000. 3. 1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교원 연봉제 운영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의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의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연구보조비라 함은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대학이 교원에게 매년 지급하는 보조비를 말한다.

제 4 조(연구보조비의 책정) ① 교원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의 기본연봉에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보조비를 포함하고 있다.

② 제1항의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보조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 수 : 26,055,000 원
2. 부 교 수 : 21,847,500 원
3. 조 교 수 : 17,527,500 원
4. 전임강사 : 11,902,500 원

제 5 조(예산) 연구보조비는 매년 예산 중 교비회계에서 책정한다.

제 6 조(비과세 기준)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.

제 7 조(연구보조비의 지급방법) 연구보조비는 교원연봉제운영규정에 의거 매월 교원에게 지급되는 월봉액에 포함하여 제4조 제2항에 의거 매월 균등하게 지급한다.

제 8 조(준용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와 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